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 11. 29.>

## 제·개정 및 폐지 예고문

경기인 등록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회규관리규정 제3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1. 11.

대한체육회장

### 경기인 등록 규정 일부개정·폐지 사전예고

#### 1. 제정·개정·폐지 이유

- 매년 등록하는 경기인 등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1월 1일부터 실질적 등록 시기까지의 미등록 기간 최소화를 위한 등록 유효기간 연장
- 4대 주요 징계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처분 시 영구 등록 금지 조치 관련 판례를 적용하여 규정 정비

#### 2. 주요내용

- 경기인 전체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을 기존 학생운동부 소속의 선수와 같이 2월 말일까지로 확대
- 4대 주요 징계사유로 인한 자격정지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처분 종료 후 추가 5년 등록 제한, 3년 이상인 경우 추가 10년 등록 제한하여 사회적 인식, 관련자 2차 피해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축소 개정

#### 3. 의견제출

- 이 경기인 등록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체육회 법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이유
-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대한체육회 법무팀 이메일 주소: law@sports.or.kr

다. 의견제출방법: 이메일

붙임 1. 경기인 등록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안)

### □ 개정사유

#### ◎ 징계양정 및 결격사유 간 규정 정비

- 지난 '19년 1월, 체육계 만연한 비리 척결과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4대 주요 징계사유(폭력·성폭력,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 시 경기인 등록을 영구 금지하도록 함
- 이로 인해 4대 주요 징계처분을 받은 경기인(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 복귀가 대폭 줄어든 건 사실임. 그러나, 위반행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영구히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 당하는 등의 사유로 소송 패소 사례("판례" 참조)\*가 나타나면서 결격 사유 재검토 필요

#### ※ [판례]

##### ☞ 소송 패소 사례(2021가합○○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 원고는 2008.1.1.부터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
- 훈련비 중 훈련용 유류비를 이용하여 2017.1.4.~2019.5.25.까지 69회에 걸쳐 4,245,139원 상당액을 원고 소유 차량에 주유하고, 법인카드로 식당에 미리 결제 후 1,700,000원을 2회에 걸쳐 현금으로 돌려받음(배임행위) → 총 5,945,139원 배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19.12.27.)
- 피고(○○체육단체)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배임행위를 근거로 징계규정 제2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처분**('20.7.13.)
- 원고는 대한체육회에 재심의 신청했으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기각 결정('20.10.28.)
- (판단)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징계 기간'이 아닌 '등록 불가 기간'을 고려)하여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

\* 해당 코치는 영구제명효과로 인해 지도자 또는 심판 활동 불가, 각종 대회 참가활동 불가 등 원고의 신분에 중대한 불이익 초래. 원고가 받게 될 사실상의 불이익의 정도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징계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임

---

### ☞ 소송 패소 사례(2022가합○○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 원고는 2011.7.부터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
  - 피고는 원고가 2017년 ◇◇초등학교와의 경기에서 심판판정에 항의하고, 그 과정에서 주심의 허벅지를 가격하였다는 사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처분**(‘17.7.14.)
  - 원고는 대한체육회에 재심의 신청했으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기각 결정(‘17.8.21.)
  - **(판단) 징계사유는 존재하지만, 영구 등록금지 시키는 규정이 무효이므로 지도자 등록 신청에 대해 승인해야 한다고 판단**
- \*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징계자체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특정사유로 인한 자격정지 1년 이상 시 영구히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은 민법 제2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로 봄이 타당. 이 규정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면 징계심의를 통해 제명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른 결격사유와의 형평도 맞지 않으므로 징계대상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신의칙에 부합하게 개정되어야 함.
- 

### ◎ 등록 유효기간 연장

- 현행 경기인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당해 연도 말일까지이나, 학교운동부 소속 선수는 방학기간을 고려해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함
- 학교 소속 지도자 등은 계약관계에 따라 다음해 2월까지 활동하나, 학생 선수와 함께 3월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1~2월 미등록 기간 동안 위반 행위 발생 시 징계대상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책 필요

## □ 주요내용

### ◎ 징계양정 및 결격사유 간 규정 정비

- “별첨”(판례)과 같이 4대 주요 징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체육 단체와 피해자 모두에게 행정적·금전적·시간적 손해가 발생하고, 향후 판례에 따른 소송 패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타 법 사례(국가공무원법, 의료법,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를 고려하여 현행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제2항제13호

영구 등록 제한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건의함

- 징계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처분 종료 후 추가 5년 등록 제한
- 징계가 3년 이상인 경우 처분 종료 후 추가 10년 등록 제한

※ [유사 제한기간 사례]

---

◆ 경기인 등록 규정 내 선수의 등록 제한기간 검토

-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제한
-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사유로 퇴학처분 받은 경우 10년간 등록 제한
  - \* 위 사유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상 “제명”
-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 받은 경우 5년간 등록 제한

◆ 법령상 형사처벌 받은 타 직무자의 제한기간 검토

- **[국가공무원법]** 횡령, 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경우 2년 제한
    - \* 다수의 공공기관 등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인사채용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음
  - **[의료법]** 관련 법령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제한
  - **[공인노무사법]** 실형의 경우 종료 후 3년, 집행유예의 경우 종료 후 2년 제한
  - **[변호사법]** 실형의 경우 종료 후 5년, 집행유예의 경우 종료 후 2년 제한
- 

● 등록 유효기간 연장

- 경기인 등록시기 분석 결과 당해연도 3월말까지 약 80%의 경기인이 등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인등록 유효기간(제13조)은 학교운동부 구분 없이 일괄 해당연도 다음해 2월말 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등록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미 등록 20% 경기인은 2월말까지 등록 독려)

## □ 경기인 등록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b>제13조(유효기간)</b>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u>등록한 해당 연도 말일까지</u>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p> <p>1. <u>학교운동부 소속 선수의 등록 유효기간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진학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을 회원종목단체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u></p> <p>2. “생략”</p>	<p><b>제13조(유효기간)</b>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u>회원종목단체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u>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p> <p>1. “삭제”</p> <p>2. “현행과 같음”</p>	<p>· 2월까지를 기본 기간으로 확대</p> <p>· 예외조항에서 삭제</p>
<p><b>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b>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p> <p>1.~12. “생략”</p> <p>13. 관계단체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u>받은</u> 사람</p> <p>가. 폭력·성폭력 나. 승부조작 다. 편파판정 라. 횡령·배임</p> <p>14. “생략”</p> <p>③ “생략”</p>	<p><b>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b> 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p> <p>1.~12. “현행과 같음”</p> <p>13. 관계단체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u>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자격정지 3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u> 사람</p> <p>가. 폭력·성폭력 나. 승부조작 다. 편파판정 라. 횡령·배임</p> <p>1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 결격사유 정비</p>
<p><b>제26조(제한조치)</b> ① 이 규정 제14조제1항제4호<u>와 제5호</u> 및 같은 조</p>	<p><b>제26조(제한조치)</b> ① 이 규정 제14조제1항제4호<u>부터 제6호</u> 및 같은</p>	<p>· 제14조제1항제</p>

현행	개정(안)	비고
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기인 등록 결격사유를 위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등록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4.> ② “생략”	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기인 등록 결격사유를 위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등록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4.> ② “현행과 같음”	6조 신설 운영에 따른 제한조치 추가
<신설>	<b>부 칙 (2024. 0. 0.)</b> <b>(시행일)</b> 이 규정은 2024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신설

□ 별첨: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안) 전문

# 경기인 등록 규정

제정	2016. 3. 21.
개정	2016. 6. 16.
전부개정	2019. 1. 31.
개정	2020. 7. 29.
개정	2020. 11. 29.
전부개정	2021. 12. 27.
개정	2022. 1. 24.
개정	2022. 6. 16.
개정	2023. 2. 10.
개정	2023. 5. 4.
개정	2023. 7. 5.
<u>개정</u>	<u>2024. 0. 0.</u>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의 등록과 활동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선수 및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육성과 우리나라 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4.>

1. “경기인”은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를 말한다.
2. “선수”는 대회참가 등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지도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지도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심판”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심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선수관리담당자”는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로서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선수관리담당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등록”은 회원종목단체의 해당 종목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을 희망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7. “등록변경”은 선수가 소속단체, 등록지 등의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활동”은 해당 종목의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9. “소속단체”란 경기인이 활동을 하기 위해 소속된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10. “이적동의서”는 선수가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변경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11. “운동경기부”는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2. “직장운동경기부”는 직장의 장이 선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운동부를 말한다.
13. “스포츠클럽”은 선수를 포함한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4. “체육동호인부”는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운동부를 말한다.
15. “관계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경기인 등록의 나이 기준을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이상”이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이하”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신설 2023. 5. 4.>

**제3조(회원종목단체의 규정 제·개정)** ① 회원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종목의 경기인 등록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회원종목단체별로 해당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개정하여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회원종목단체별 규정이 정한 사항이 경기인의 등록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밖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종목단체에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5. 4.>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체육회 정관 제7조의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경기인과 경기인의 등록·활동에 관련이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적용한다.

**제5조(활동자격)** 등록절차에 따라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경기인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경기인으로서 활동 할 수 있다.

**제6조(경기인의 지위)** ① 경기인은 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별 대회 등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참가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각 대회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 경기인은 체육회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프로그램
2.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부의 활동 지원 사업
3.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및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
4. 우수선수 육성 등 전문체육 진흥 사업
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체육인 복지 등의 각종 사업
7. 기타 체육회가 제공하는 각종 사업 등

**제6조의2(경기인의 교육)** ① 경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한다.

② 경기인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공하는 도핑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24.]

**제7조(경기인등록시스템)** 체육회는 경기인 등록을 위한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제8조(등록신청)** ① 경기인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도종목단체에 등록 신청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종목단체가 이를 행한다.

1. 해당 시·도종목단체가 없을 경우
2. 심판의 등록

② 경기인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이 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신청서, 스포츠인권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하며, 회원종목단체는 필요 시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

③ 선수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 중 아래 각 호의 사유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사유서 및 제2항의 서류를 시·도종목단체에 제출하고, 시·도종목단체는 등록 신청자를 확인하여 등록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1.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3. 아이핀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4. 기타 사유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2. 1. 24.>

**제9조(제출서류 등) 삭제** <2022. 1. 24.>

**제10조(등록승인)** ① 경기인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종목단체는 등록신청자의 제 14조 경기인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시·도종목단체는 신청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거부 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경기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 승인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요청 한 것으로 본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승인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자의 경기인 등록을 승인하고, 필요에 따라 전국규모연맹체 등에 통보한다. 단, 경기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가 승인요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등록기간)** 경기인의 등록은 수시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종목단체가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 등록으로 한다.

1. 12세이하부 선수가 등록하는 경우 <개정 2023. 5. 4.>
2.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최초로 선수 등록을 하는 경우
3. 신설팀 소속으로 등록하는 경우
4. 군 입대 또는 제대하여 선수 등록하는 경우

**제12조(외국인등록)** 외국 국적자의 경기인 등록에 관하여는 해당 국제연맹규정,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회원종목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유효기간)**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회원종목단체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4. 0. 0.>

1. <삭제>
2. 다음 연도에 대한체육회장 및 회원종목단체장 선거의 선거인후보자로 추

천되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까지로 한다.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로 등  
록할 수 없다.

1.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선수관리담당자로서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7  
조에 따라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2. 관계단체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개정 2023. 2. 10.>
3.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개  
정 2023. 2. 10.>
4.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죄를 범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  
책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4조 제1항 제4호 이외의 사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  
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관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  
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신설 2022. 6. 16., 2023. 2.  
10.>
7.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2.  
6. 16., 2023. 2. 10.>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 2. 10.>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관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2. 6. 16., 2023. 2. 10.>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 6. 16., 2023. 2. 10.>
13. 관계단체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자격정지 3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 6. 16., 2023. 2. 10., 2024. 0. 0.>
- 가. 폭력·성폭력  
 나. 승부조작  
 다. 편파판정

라. 횡령·배임

14.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2. 6. 16., 2023. 2. 10.>

③ 해당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회원종목단체가 심판위원회 규정에 따른 심판의 제척·회피·기피 사유 및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체육목적 선수와 심판의 동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2023. 5. 4.>

**제15조(열람권한)** 회원시·도체육회의 관련 업무 담당자는 경기인 등록 및 대회 참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경기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제16조(등록비징수)** 회원종목단체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정의 경기인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장 선수 등록

**제17조(등록 및 등록지)** ① 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동경기부, 스포츠 클럽, 체육동호인부 등의 소속으로 매년 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수는 동일인이 같은 회원종목단체 안에 제18조제1항의 등록구분에서 두 개 이상의 부에 등록할 수 없다.

③ 선수는 동일인이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도(이하 “시·도”라고 한다) 안에서는 여러 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④ 선수의 등록지는 해당 선수의 소속단체가 소재한 시·도로 한다.

⑤ 대학 운동경기부의 등록지는 대학의 본교와 분교가 서로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한다.

1. 개인종목은 대학이 소재한 시·도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2. 단체종목과 개인단체전 종목은 본교와 분교를 각각 별도의 팀으로 등록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도로 등록하되, 통합하여 등록할 경우 등록지는 해당 학교가 지정하는 시·도로 하고 회원종목단체는 종목 특성에 따라 등록지 변경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대 및 원격대학의 운동경기부는 해당 학교가 지정하는 등록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정된 등록지는 등록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등록 구분)** ① 회원종목단체는 목적 및 연령\_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부를 둔다. 이때, 15세 이하 선수는 육성목적의 부로 등록하며, 16세 이상 선수